

2022년 미디어재단 TBS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 대한 고발의 건

의안 번호	1254
----------	------

제안연월일 : 2023. 9. 6.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주 문

- 2022년도 미디어재단TBS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이승훈 전 전략기획실장과 이영걸 전 광고 사업부장이 답변하였던 내용이 거짓증언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제315회 정례회 2022년도 미디어재단TBS 소관 행정사무감사(2022.11.) 중 TBS FM을 통해 송출된 2개 광고방송의 상업광고 해당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TBS는 2개 광고방송이 각각 캠페인 및 협찬 고지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음.
-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 8. 2. 실시된 2023년 제26차 회의에서 2개 광고방송 모두 상업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TBS의 답변은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으므로 이에 해당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 대한 고발을 실시하고자 함.

3. 주요경과

- 2022.10.5. TBS FM 상업광고 송출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 2022.10.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윤두현 의원 질의
- 2022.11.3.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TBS 행정사무감사 실시
 - 이효원 의원, 가히·동아전람 2개 광고방송에 대한 상업광고 해당 여부 질의
- 2023.8.2. 방통위, TBS에 과태료 및 과징금 총 2,303만원 부과 의결
 - TBS의 상업광고 송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 과징금 1,503만원 부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거짓자료 제출에 대하여 과태료 700만원 부과

4. 주요답변(회의록 별첨)

- 전 이승훈 전략기획실장(대표이사 직무대리)
 -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저희 티비에스 내에서는 준수하여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광고는 광고가 아니고 캠페인으로서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 협찬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 동아전람 전시업체의 경우에는 협찬고지 규칙에 따라서 방송사가 후원하는 행사는 협찬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그 내용은 상업성이나 광고성이 없는 부분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 회사에서 한글날 캠페인으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 전 이영걸 광고사업부장

- 이 후원 요청 허가 안내라는 부분이 계약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10월에 저희가 비전자문서로 등록을 시켰었습니다.
- 이런 행사 고지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가 주관·후원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후원입니다.

5. 위법·부당성 및 인적사항

가. 위법·부당성 판단 및 조치

- 미디어재단TBS는 FM 95.1MHz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상업광고방송 제외, 단 협찬 및 공익광고 허용)”을 허가받아 지상파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음.
- 지난 11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22년도 미디어재단 TBS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도중 TBS FM에서 송출된 ‘가히’, ‘동아전람’ 등 2개 방송이 상업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이효원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리였던 이승훈 전략기획실장은 관련 규정 및 심의에 따라 송출된 캠페인 및 협찬 고지에 해당할 뿐 상업광고가 아니라고 답변하였음.
- 당시 광고기획부장이었던 이영걸 부장 역시 ‘동아전람’ 광고가 협찬 고지임을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후원요청에 대한 허가 공문을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의원 요구자료로 제출하였음.

- 2023. 8. 2.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2개 방송 모두 상업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방송허가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303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미디어재단TBS의 답변은 사실을 호도하고,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거짓증언으로 판명되었는 바, 대표이사 직무대리와 광고기획부장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 조치하고자 함.

나. 관련 대상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소재지	비 고
미디어재단TBS 정책기획팀	사원	이승훈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거짓증언
미디어재단TBS (대기발령 중)	사원	이영걸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거짓증언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일시 2022년 11월 3일(목)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생 략)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이승훈 전략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유선영 이사장과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3일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이승훈.

(생 략)

○ 이효원 위원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해당 장면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있었던 질의사항입니다. 재생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방금 들으셨듯이 국회의원의 질의사항을 보면 지난 10월 5일 TBS FM에서 상업광고를 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실제로 그 광고를 들었고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티비에스가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전파 허가를 받을 때 허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사례입니다.

실장님, TBS FM의 허가사항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교통과 기상정보를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효원 위원 그렇죠. 거기에 또 상업광고는 허용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죠?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현재 불허 상태입니다.

○ 이효원 위원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티비에스가 얼마나 많은 법정제재를 받고 행정 지도를 받아왔는지와 이거는 차원이 다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공공재인 전파 사용에 있어서 허가사항을 위반한 것은, 이거는 전파 반납까지도 요구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행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저희 티비에스 내에서는 준수하여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광고는 광고가 아니고 캠페인으로서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 협찬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 이효원 위원 실장님, 오늘 선서하셨죠?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 이효원 위원 방금 하신 말씀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 분명히 밝힙니다.

본 위원이 녹음한 파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음 재생)

들으셨다시피 화장품과 전시업체 두 군데가 또렷하게 방송되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프로그램 중간에 설마하니 협찬이 아닐까 하고 오해를 했는데 이건 협찬도 사실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청자미디어재단 같은 경우에는 알기쉬운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이라는 지침을 내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TBS FM 같은 경우에는 상업광고가 당연히 불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모니터링 자체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들으셨던 해당 광고가 MBC에서 똑같이 나갔고요 엄연히 광고로 취급이 돼서 모니터링 대상이 돼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이게 MBC에서는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왜 티비에스에서는 이게 광고가 아닙니까?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말씀하신 캠페인은 한글날 캠페인으로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협찬을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효원 위원 방금 캠페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캠페인이 되는 거예요?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한글날 캠페인으로 그 회사가 만들어서 저희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원 위원 그러면 전시업체는요?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동아전람 전시업체의 경우에는 협찬고지 규칙에 따라서 방송사가 후원하는 행사는 협찬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이효원 위원 방금 캠페인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이 모니터링 기준에 따르면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 분명히 프로그램 진행자가 프로그램 중간이나 말미에 구두로 협찬사 이름을 말하거나 방송사의 캠페인을 틀고 이를 협찬한다고 고지를 하는 것, TV 프로그램의 경우 자막을 넣는 것으로 협찬고지를 하는 것 등이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방송을 틀고 그 앞에 캠페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

다. 그리고 해당 광고가 티비에스에 무슨 공익캠페인을 선도하고 있습니까?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 내용은 상업성이나 광고성이 없는 부분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 회사에서 한 글날 캠페인으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 이효원 위원 그런데 MBC에서는 광고로 나가고요?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MBC 상황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 이효원 위원 그렇다면 협찬의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것 같은데 광고주와 티비에스 캠페인에 대한 협약서나 계약서 같은 것이 있겠죠?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원 위원 그 부분 혹시 지금 자료 제출 바로 가능하십니까?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비밀유지의무나 이런 부분들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이효원 위원 비밀유지가 뭐가 여기 있어요, 이미 캠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 부분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이효원 위원 가리는 내용 없이, 캠페인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비밀유지가?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실무팀에서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 제출하겠습니다.

○ 이효원 위원 그 부분 제출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생략)

○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오전 질의 시간에 상업광고 2건에 대해서 계약서 요청을 드렸을 때 비밀유지의무 조항 없다고 말씀하셨죠?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 이효원 위원 오전에 제가 상업광고 관련해서 계약서 요청했을 때요 제가 분명히 저는 이미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협찬광고 말씀하시는 거죠?

○ 이효원 위원 네, 비밀유지 조항. 그래서 방금 저희가 계약서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여기에는 비밀유지의무 조항 없습니다. 위증하셨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제가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담당 부서장이 아닌 관계로 통상적인 계약서의 비밀유지 조항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그 부분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하고 비밀유지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효원 위원 또 이 관련 계약에 따른 시행 공문도 자료로 요청을 드려서 조금 전에 받았는데요 박람회 관련 광고 먼저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광고요청사에서 MBC 건축박람회 행사후원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세요?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 **이효원 위원**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걸 이메일로 보냈기 때문에 비전자문서로 등록을 했고 문서번호는 경영지원본부-8120으로 되었습니다. 다시 티비에스는 해당 문서번호를 시행하기 위한 공문을 광고요청서에 전송을 했습니다. 그 문서 제목이 행사후원 요청 허가의 건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조금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 지금 그 건 관련해서 확인이 되세요?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아까 실무자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 **이효원 위원** 해당 공문 문서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저희가 발송한 공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효원 위원** 네.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문서번호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 **이효원 위원** 문서번호가 누락이 됐다고요?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없는데요…….

○ **이효원 위원** 문서번호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광고팀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이효원 위원** 네, 직접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이종환** 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광고사업팀 이영걸입니다.

동아전람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박람회 건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업무상 프로세스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캠페인이 진행되고 종료되는 시점 전후로 해서 광고주 쪽에 청구를 드립니다. 청구를 드릴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실행확인서 아니면 거래명세표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대표이사 또는 광고사업부장의 직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표이사 직인이 찍히고 있고 그 대표이사 직인을 찍을 때 원래 진행했던 원 계약의 근거에 의해서 별도로 문서를 올리지 않습니다. 원 계약을 올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실행확인서 또는 거래명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나가는 부분입니다.

이번 동아전람 건 같은 경우에는 동아전람 공문이 8월 1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건에 대해서 동아전람 계약은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약되어 있고 금액이 한 75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 팀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먼저 도장을 찍어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런 업무를, 저희도 영업만 전문적으로 뛰는 사람들이라 보니까 행정업무에 솔직히 많이 어두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약서 진행된 동아전람의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부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10월에 비전자문서로 등록을 시켰던 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미숙했던 부분이고…….

○ **이효원 위원** 제가 여쭙보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MBC 건축박람회 행사후원 요청의 건이 왔고, 요청이 왔으면 허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네, 네.

○ **이효원 위원** 그러면 허가하신 건에 대해서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네, 보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 **이효원 위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안 보내셨다는 거예요?

○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보냈습니다.

○ **이효원 위원** 그러면 문서번호가 뭐냐니까요, 보내셨다면?

○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캠페인이 끝나면 실행확인서라든가 거래명세서라든가 보낼 때 일반적으로 그냥 직인을 찍어서 보냅니다, 그 근거는 계약한 원래 원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동아전람 같은 경우에도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영업직 직원이다 보니 행정업무에 많이 익숙치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계약이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약서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실행확인서처럼 날인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후원 요청 허가 안내라는 부분이 계약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10월에 저희가 비전자문서로 등록을 시켰었습니다.

○ **이효원 위원** 그러면 문서번호가 없는 게 맞다는 건가요?

○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네.

○ **이효원 위원** 문서등록대장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여나 해당 공문이 허위인 거 밝혀지면 담당자 및 책임자는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네, 알겠습니다.

○ **이효원 위원** 이 행사 관련해서 후원을 하긴 하셨다는 거죠?

○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네, 맞습니다.

○ **이효원 위원** 그러면 이 행사 관련해서 티비에스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거도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종환** 담당자가 따로…….

○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광고팀장이 같은 담당자고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환** 담당자 설명해 주세요.

○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제가 들어가느라고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 **이효원 위원** 행사후원 요청을 했는데 이 행사와 관련해서 티비에스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냐고요?

○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통상적으로, 저도 티비에스 오기 전에 다른 매체에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 고지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가 주관·후원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후원입니다.

○ **이효원 위원** 형식적인 뭐요?

○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티비에스 매출 증대를 위해서 형식적인 후원 요청을 받았습시다.

○ **이효원 위원** 형식적인 후원 요청이고 실질적으로 한 역할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저희뿐만이 아니라 업계 관례적인 부분입니다.

○ **이효원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나 시행공문 같은 것도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시행공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월부터 이루어지는 박람회 건을 기준으

로 잡은 거는 저희는 박람회 회사와 계약을 맺은 계약 건입니다.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상 실행확인서라든가 거래명세서, 저희가 계약 종료 이후에 광고주들한테 청구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원안 품의서입니다. 그 부분으로 공문을 작성을 했었던 것입니다.

○ 이효원 위원 실질적으로 한 역할은 없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회사 이야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TBS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수신자 (주)동아전람

(경유)

제 목 행사 후원 요청 허가 안내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아전람 제2022-38호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귀사가 진행하는 하반기 공익적 행사 「건축박람회」 및 유사 행사의 후원을 허락합니다. 끝.

(재)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시행일 2022. 08.08

TBS 광고사업팀

담당

광고사업팀장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홈페이지/www.tbs.seoul.kr

전화 02) 311-5254

/ 전송 02) 311-5259

/ 이메일 [\[redacted\]@tbs.seoul.kr](mailto: [redacted]@tbs.seoul.kr)